영업자관리_영업허가(법28~29조)

영업허가의 면제 (법 제29조, 규칙 제31조, 고시 제2018-246호)

구분	면 제 내 용
법 제29조	1.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, 보관 · 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.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· 연구용 ·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, 보관 · 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. 항만, 역구내(驛區內)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
규칙 제31조	1.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은 운반하는 자 2.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단순 유독물질 -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 : 연간 120톤 이하 사용시 면제 -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 : 연간 60톤 이하 사용시 면제 - 지구단위계획구역(주거형 제외), 전용공업지역 안의 사업장 : 연간 240톤 이하 사용시 면제 3.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제한물질 - 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 : 연간 60톤 이하 사용시 면제 4.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- 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 : 장외(간이장외 제외), 위해 제출 대상이 아닌 자 5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: 장외 또는 위해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.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
환경부고시 제2018-246호	1. 제한물질 중 납(고체에 한 함)을 어린이용제품 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취급하려는 자 2.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 - 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 : 연간 100kg 이하 사용시 면제 3. 니코틴과 그 염류중 하나를 2%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